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86
----------	------

2018년 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2. 14.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19명】
2. 회부일자 : 2018. 2. 19.
3.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2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박양숙 의원)

1. 제안이유

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學)으로,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전통의

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엔 그 규모가 1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나. 이에 서울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시장의 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한의학 육성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제정안의 취지

- 동 조례 제정안은 「한의학 육성법」에 따라 한의학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안 제출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거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관련

- 동 조례 제정안은 한의약을 육성하는 것으로 한의학 육성은 한약학에 의한 한약사와 이들이 운용하는 한의학 기술과 관련된 사안으로 동 조례 제정안 제2조는 한의약과 한의약기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상위법의 조항을 이기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동 조례 제정안 제3조는 시장이 한의약기술의 진흥시책을 세우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한의학 육성법」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동 조례 제정안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법의 조항을 이기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구체적인 수행방향과 관련

- 동 조례 제정안 제5조는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 운용해야 한다고 하여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으로 시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상위법의 조항을 이기한 것으로 보이나 상위법인 「한의약 육성법」의 경우 “4. 한약시장의 육성·지원” 이나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내용상으로 한의약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음.

- 동 조례 제정안 제8조는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시책마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시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이에 해당하는 근거는 없는 상태임. 그러나 현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현행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사료됨.

- 다음으로 제정안 제8조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과 학계, 연구기관 간 협동사업을 촉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한의약 육성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여겨짐.
- 제정안 제8조제4항의 경우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 이미 한의약 전담인력이 보건소, 시립병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인사권 침해이기 보다는 현재 상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3 종합의견

- 동 조례 제정안이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의 육성과 관련하여 한의약에 대한 법적인 정의 등은 상위법의 내용을 이기한 것으로 입법예의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시장에게 부과하는 의무 등도 대부분 상위법의 사항을 이기한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무리는 없다고 할 것임.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몇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현재 시립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시민건강국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서울의료원 한의학과 운영 등)들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86
----------	------

발의년월일 : 2018년 2월 14일

발 의 자 : 박양숙, 강성언, 김경자(양천),
김광수(도봉), 김미경, 김용석(도봉),
김제리, 김진철, 김혜련, 김희걸,
박기열, 박호근, 우형찬, 유 용,
이병해, 이윤희, 이현찬, 장인홍,
한명희 의원(19명)

1. 제안이유

-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學)으로,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엔 그 규모가 1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다.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시장의 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한의학 육성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의 생산·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인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한의약육성법시행령」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학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 및 협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한의학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학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

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